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2019.11.27.(수) 10:00]

검 토 보 고 서



복지도시위원회

목 차

1.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	---------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최종익 〉

1. 안 건 명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158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5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8일

3. 제안이유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 목적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위탁 내용

○ 위탁시설 현황

구 분	위탁대상시설	
시설명	(가칭) 신촌그랑자이어린이집	(가칭) 서교동 청년주택어린이집
소재지	마포구 대흥동 12 신촌그랑자이 관리동 1~2층	마포구 서교동 395-43 서교동 청년주택 1층
규모 (㎡)	581.4	455.4
예정정원 (명)	70	60
확충유형	신규 - 공동주택 관리동 - 무상임대(무기계약)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위탁범위 :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 수탁기관 선정방식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다. 소요예산

- 400백만원(국비 120백만원, 시비 220백만원, 구비 60백만원)

라. 추진일정

- 2019. 12.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공고
- 2020. 1.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20. 2. : 무상임대 협약 및 위탁운영 계약 체결
- 2020. 2.~3. :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구매 방침 수립 및 시행
- 2020. 4.~5. : 구립어린이집 개원

5. 관계법령

-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제20조~제22조

6. 검토의견

가. 제안 경위

- 본 동의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9.11.15.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8호로 2019.11.18.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²⁾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 2개소의 운영사무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³⁾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기준 마포구 전체 어린이집 208개소 중 구립 어린이집 <표 1>은 70개소로 전체 대비 33.6%를 차지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표 1〉 구립어린이집 연도별 현황

(2019.11월 기준)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구립어린이집 수 (증가 수)	46 (0)	49 (3)	62 (13)	68 (6)	70 (2)	5년간 24개소 증가

나.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 본 건은 ‘(가칭)신촌그랑자이어린이집’외 1개소의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1)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

3)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으로써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필요한 사무에 해당됨.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4)에 따라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5)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제1항6)에 따라 구청장은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원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범위는 통상적인 구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임.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제20조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도 부합하다 판단됨.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 4)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5)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6) **제20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1.19>